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0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윤건영 · 허성무 · 김남희
문진석 · 윤종균 · 김성희
정태호 · 이주희 · 김우영
이용우 · 남인순 · 백승아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사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경제계·한국공인회계사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⑥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와 선거·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정기 및 특별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6(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사무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감사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경제계·한국공인회계사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u> <u>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u>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⑥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매년 2차례 이상 정기감사와 선거·국민투표 실시에 즈음하여 특별감사

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 사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정기 및 특별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